

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여건과 맞지 않는 일부 항목이 있으며,
- '97년 이후 개장되는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출하자가 부담하던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역(농림사업지침서, 국고보조금교부조건)
- 하역체계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으로 출하자의 하역비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로 이윤 증대 도모.
- 시장 내 쓰레기 감량과 표준규격 출하로 쾌적한 시장분위기 조성.

3. 주요내용

-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영업시간 개정
 - 당초 15:00 ~ 익일 12:00 → 변경 05:00 ~ 18:00
- 쓰레기 발생 억제와 표준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쓰레기유발 부담금 상향 개정 (배추 외 5개 품목 당초 1,000원~6,000원 → 변경 2,000원~10,000원)
- 중도매업 허가 및 취소, 보조경매 참가인 승인, 매매참가인 신고, 출하자 및 산지유통인 등록과 취소 등의 업무를 내부위임.
- 출하자가 부담하던 표준하역비를 2002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을 도매시장 개장시부터 법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

4. 참고사항
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후 도매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과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상부규정 또는 자체 형편에 의거 개선·보완하여 도매시장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취지로서,
- 농산물 도매시장 영업시간 변경, 쓰레기유발 부담금 상향조정, 일부 권한 위임 업무를 내부위임 사항으로의 변경과 표준하역비 부담시기 변경 등으로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- 개정 내용의 제24조(허가조건), 제65조(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징수), 부칙 제1조(표준하역비 부담시행일)은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와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반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조례개정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,
-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상향 조정은 당초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출하 농민의 부담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- 기타 개정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